##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4 발의연월일: 2025. 4. 29.

발 의 자:성일종·최수진·강명구

김소희 • 이종욱 • 고동진

강대식 • 이인선 • 최은석

이헌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또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식을 같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연말 정기총회의 경우 시상보다는 결산과 대표자의 취임과 이임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정기총회가 아닌 각종 행사에서는 상장의 수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의 상장수여행위에 대하여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연 1회에 한 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법률을 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본문 중 "정기총회에"를 "총회 및 각종 행사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			
지 아니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례적 행위	2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	자		
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예술·체육행사, 각급학			
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			
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			
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			
위와 구·시·군단위 이상			
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			
·종친회·동창회, 동호인			
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	총회 및 각종 행사에		

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 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 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 파. (생 략) 3. ~ 6. (생 략) ③ ~ ⑤ (생 략)

차. ~ 파.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